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5. 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21일
- 나. 제출자 : 신흥식 의원 외 4인
-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2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환경변화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협의회 기능에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 협의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여 건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안 제3조)

-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협의회 간사를 “건강증진과장”에서 “보건지원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에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였고,
 -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에 협의회 간사를 현행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관련 법령에 맞게 소관부서장으로 변경하였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국민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국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협의회로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
----------	-----

발의연월일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신홍식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행정환경변화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의 기능에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협의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여 건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안 제3조)

- 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협의회 간사를 “건강증진과장”에서 “보건지원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보건지원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상과 구민·단체 또는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후단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로, “임시회의”를 각각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을 “두며 간사는 보건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업무수행이 필요”로 한다.

제9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으로,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을 “세미나 등을

개최”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사항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를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민건강 증진법</u>」 제10조에 따라 ----- -----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u>----- ----- 등에 ----- ----- -.</p>
<p>제2조(기능) <u>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u></p>	<p>제2조(기능)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p>
<p>1. <u>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p>	<p>1. 「<u>국민건강증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 ----- ----- -----</p>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
민 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
한 사항

<신 설>

3.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
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구민
·단체 또는 보건분야에 근무하
는 5급이상공무원 중에서 구청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
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2. 법 제6조에 따른 -----

3.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
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
의 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 -----
----- 15인 이내 -----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
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상
과 구민·단체 또는 건강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
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생략)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 남은 기
간-----.

제5조(회장의 직무) ① -----

----- 총괄한다.

② -----
-----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6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
----- 임시회-----
-----.

③-----
----- 출석위원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

----- 두며 간사는 보건지원과장-----.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 업무 수행에 필요-----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 세미나 등을 개최-----.

제10조(수당 등) -----
-----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

제11조(운영세칙) -----
---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